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
The Organization of Consumer Affairs Professionals in Business

소비자기본법

CONTENTS

1 소비자 권리와 의무

2 사업자의 의무

3 소비자 안전

4 리콜 제도

1-1 소비자 개념

- 소비자
  - ✓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서비스, 시설물 포함)을
  - ✓ 소비생활을 위해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자
  - ✓ 생산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자
  - ✓ 제공 물품을 농업, 축산업, 어업 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자

    - 다만 제공 물품 등을 원재료, 자본재, 유사 용도로 생산활동에 사용하는 자는 제외
    - 해앙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원양어업을 하는 자는 제외

- 소비자 단체 :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소비자가 조직한 단체

1-2 소비자의 권리

1)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 등"이라 함)으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 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 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구입장소·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해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1-2 소비자의 권리

5)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해 활동할 수 있는 권리
8)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1-3 소비자의 의무

1) 소비자는 사업자 등과 더불어 자유시장경제를 구성하는 주체임을 인식하여 물품 등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2) 소비자는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소비자는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행동과 자원절약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2-1 사업자의 개념

- 물품을 제조,(가공, 포장 포함), 수입, 판매하거나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
- 사업자 단체 :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

2-2 사업자의 의무

1) 사업자는 물품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물품 등을 공급함에 있어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물품등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2-2 사업자의 의무

4) 사업자는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그 개인정보를 성실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5) 사업자는 물품 등의 하자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해결하거나 보상하여야 하며,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3 사업자의 기준 준수

1) 사업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소비자의 생명, 신체, 재산의 위해 방지)에 따라 국가가 정한 기준에 위반 되는 물품 등을 제조・수입・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물품 등의 성분·함량·구조 등 안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② 물품 등을 사용할 때의 지시사항이나 경고 등 표시할 내용과 방법

③ 그 밖에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3 사업자의 기준 준수

2) 사업자는 제10조의 규정(표시, 포장 등의 기준)에 따라 국가가 정한 표시기준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상품명·용도·성분·재질·성능·규격·가격·용량·허가번호 및 용역의 내용

② 물품 등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제공한 사업자의 명칭 (주소 및 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및 물품의 원산지

③ 사용방법, 사용·보관할 때의 주의사항 및 경고사항

2-3 사업자의 기준 준수

④ 제조연월일, 품질보증기간 또는 식품이나 의약품 등 유통과정에서 변질되기 쉬운 물품은 그 유효기간

⑤ 표시의 크기·위치 및 방법

⑥ 물품 등에 따른 불만이나 소비자피해가 있는 경우의 처리기구(주소 및 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및 처리방법

⑦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시각장애인을 위한 표시방법

2-3 사업자의 기준 준수

3) 사업자는 제11조의 규정(잘못된 소비, 과다한 소비 방지)에 따라 국가가 정한 광고기준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용도·성분·성능·규격 또는 원산지 등을 광고하는 때에 허가 또는 공인된 내용만으로 광고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특정 내용을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소비자가 오해할 우려가 있는 특정용어 또는 특정표현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광고의 매체 또는 시간대에 대하여 제한이 필요한 경우

2-3 사업자의 기준 준수

4) 사업자는 제12조제2항의 규정(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부당행위), 부당에 따라 국가가 지정·고시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사업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개인정보 보호기준)에 따라 국가가 정한 개인정보의 보호기준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3-1 소비자 안전

- 소비자 안전이란 물품 또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해(危害)로부터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소비자는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 등'이라 함)으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집니다(「소비자기본법」 제4조제1호).

3-1 소비자 안전

소비자안전 관련 법률

- 현행 소비자의 안전을 추구하는 목적을 가지는 법률은 일반법으로는 대표적으로 「소비자기본법」이 있으며 「제품안전기본법」, 「식품위생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 제품 안전을 규율하는 개별 법률이 있습니다.
-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된 각 법률은 특수한 제도를 가지고 제품의 안정성을 확보하거나 서비스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3-2 소비자 안전 관련 제도

❖ 리콜제도

리콜(Recall)이란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 또는 서비스(이하 "물품 등"이라 함)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강제적으로 물품 등의 위해성을 알리고 해당 물품 등을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또는 제조·수입·판매·제공 금지하는 등의 적절한 시정조치를 함으로써 위해요인을 제거하는 소비자보호조치입니다.
(「소비자기본법」 제48조, 제49조 및 제50조)

3-2 소비자 안전 관련 제도

❖ 리콜제도

리콜제도는 자동차, 식품, 축산물, 공산품, 전기용품, 의약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3-2 소비자 안전 관련 제도

❖ 위해정보관리

소비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서비스로 인해 소비자가 사망했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또는 소비자의 재산상의 위해(危害)를 가져오는 등 소비생활에서 발생되는 위해물품, 위해경위, 위해내용, 위해부위 등에 관해 기록한 정보를 통해 위해정보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3-2 소비자 안전 관련 제도

❖ 위해정보관리

위해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과정을 위해정보관리라고 하는데, 현재 위해정보관리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안전센터(www.ciss.go.kr)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51조제3항제1호)

3-2 소비자 안전 관련 제도

❖ 제조물 책임

- 「제조물 책임법」은 소비자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면 제조업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더라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제조물 책임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조업자가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제조물 책임법」 제1조 및 제3조제1항).

3-2 소비자 안전 관련 제도

❖ 제조물 책임

리콜제도가 결함 제품 등을 미리 회수해서 전체 소비자의 위해(危害)를 방지하는 사전적 피해예방제도인데 반해, 제조물 책임제도는 결함 제품 등의 사용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별 소비자의 손해를 배상해 주는 사후적 피해구제제도입니다.

3-3 소비자 안전 : 위해정보관리

위해정보관리란?

- 위해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과정을 위해정보관리라고 하는데, 현재 위해정보관리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www.ciss.go.kr)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51조제3항제1호).

- 위해정보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서비스(이하 "물품 등"이라 함)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한 정보를 말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52조제1항).

3-3 소비자 안전 : 위해정보관리

❖ 위해정보관리 절차

- **위해정보 수집**

소비자안전센터는 위해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52조제1항).

3-3 소비자 안전 : 위해정보관리

❖ 위해정보관리 절차

위해정보 분석 및 결과에 따른 조치

소비자안전센터는 수집한 위해정보를 분석해서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집니다. (「소비자기본법」 제52조제2항).

3-3 소비자 안전 : 위해정보관리

❖ 위해정보관리 절차

① 위해방지 및 사고예방을 위한 소비자안전경보의 발령

② 물품 등의 안전성에 관한 사실의 공표

③ 위해 물품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한 시정 권고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시정조치·제도개선 건의

⑤ 그 밖에 소비자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3-3 소비자 안전 : 위해정보관리

❖ 위해정보관리 절차

- 한국소비자원은 위 3.에 따라 시정 권고를 받은 사업자에게 수락 여부 및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이행 결과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제52조제3항).

  ① 시정 권고에 따른 이행 내용과 실적

  ② 시정 권고를 이행하지 못한 물품 등에 대한 조치계획

  ③ 위해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3-3 소비자 안전 : 위해정보관리

❖ 위해정보관리 절차

- 한국소비자원은 물품 등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위 3.에 따른 시정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요청을 해 줄 것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52조제4항).
- 위해정보를 수집·처리하는 자는 물품 등의 위해성이 판명되어 공표되기 전까지 사업자명·상품명·피해정도·사건경위에 관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52조제5항).

3-4 소비자 안전 : 취약계층 보호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위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사업자가 다른 법령에서 정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 조치

3-4 소비자 안전 : 취약계층 보호

② 다른 법령에서 안전기준이나 규격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가. 수거·파기· 수리·교환·환급 또는 제조·수입·판매·제공의 금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 의 권고 = 사업자가 해당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공거위나 시도지사는 권고 받은 사실의 공표 가능

나. 수거 • 파기 등의 명령

다. 과태료 처분

③ 3. 그 밖에 물품 등에 대한 위해방지대책의 강구

3-4 소비자 안전 : 취약계층 보호

2) 위의 내용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을 신속히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1 리콜의 의의

- 리콜은 물품 등의 위해로 소비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때 해당 물품 등을 회수해서 소비자피해를 예방한다는 점에서 물품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개별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소비자피해보상제도'와 다르고, 소비자피해 발생의 사전제거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소비자피해가 발생한 후 개별손해에 대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제조물책임제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4-2 리콜의 유형

- ‘자발적 리콜’ : 사업자가 자신이 공급하는 물품 등이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안전에 위해를 계속적·반복적으로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어 스스로 결함을 시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강제적 리콜’ : 정부가 사업자에 대해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등의 수거·파기를 강제함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강제적 리콜은 물품 등의 결함과 긴급성의 정도에 따라 ‘리콜권고’와 ‘리콜명령’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49조 및 제50조).

4-2 리콜의 유형

규제

구분	근거법령	주관부처	리콜 방법
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	환경부	배출결함시정
	「자동차관리법」 제31조	국토교통부	제작결함시정
식 품	「식품위생법」 제45조 및 제72제3항	식약처,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회수, 폐기, 성분·배합비율 등 변경
	「식품안전기본법」 제19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회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0조	식약처,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	회수, 폐기처분
먹는물	「먹는물관리법」 제47조	환경부 시·도지사	회수, 폐기처분

4-2 리콜의 유형

구분	근거법령	주관부처	리콜 방법
축산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2 및 제36조	식약처,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회수, 폐기, 성분·배합비율 등 변경
안전인증대상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0조	시·도지사	개선, 파기, 수거, 교환, 환불, 수리
제품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 제11조, 제13조	중앙행정기관의 장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개선조치, 제조·유통의 금지
의약품	「약사법」 제39조	식약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회수, 폐기
모든 물품 또는 서비스	「소비자기본법」 제48조, 제49조 및 제50조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수거, 파기, 수리, 교환, 환급, 제공금지

4-3 리콜의 절차

- 리콜은 수집된 물품 또는 서비스(이하 “물품 등”이라 함)의 결함정보를 근거로 해서 시작되는데, 자발적 리콜인지, 강제적 리콜인지에 따라 그 진행절차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 그러나 기본적으로 결함이 발견되어 소관 부처에 의해 또는 사업자의 자발적 시험·분석에 의해 결함이 있는 것으로 확정된 이후에는 [사업자의 시정계획서 제출→소비자에 대한 리콜계획의 통지→리콜조치→리콜결과의 보고]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4-3 리콜의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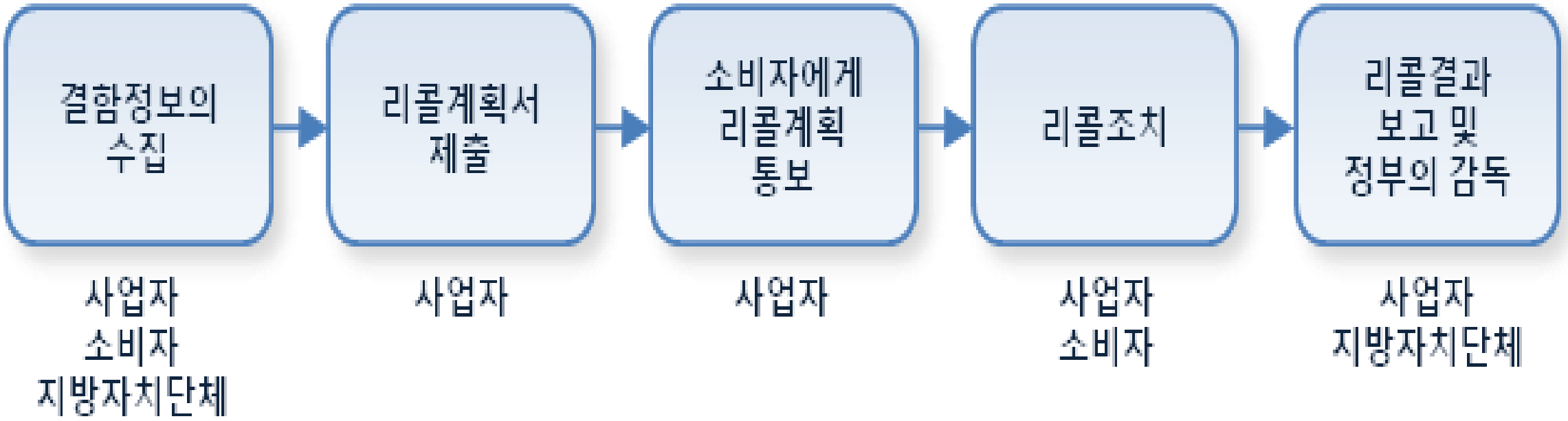
결함정보의 수집
리콜계획서 제출
소비자에게 리콜계획 통보
리콜조치
리콜결과 보고 및 정부의 감독
사업자
소비자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사업자
사업자
소비자
사업자
지방자치단체

4-4 리콜 : 정보의 수집

소비자로부터의 수집

소비자는 소비자안전센터 인터넷 홈페이지(http://ciss.go.kr)를 통해 물품 등의 결함정보를 제공하거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피해구제기관, 소비자단체 등과의 상담을 통해 결함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51조).

4-4 리콜 : 정보의 수집

사업자로부터의 수집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 등에 결함이 있음을 알게 되면, 이 사실을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함)에 보고함으로써 결함정보가 수집됩니다.

4-4 리콜 : 정보의 수집

사업자로부터의 수집 : 결함정보 보고의무

- 사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수입·판매 또는 제공한 물품 등의 결함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전자적 보고 포함)해야 하며,
- 다만 아래 ②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해당 물품 등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또는 제조·수입·판매·제공의 금지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이하 "수거·파기 등"이라 함)를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47조제1항).

4-4 리콜 : 정보의 수집

사업자로부터의 수집 : 결함정보 보고의무

① 제조·수입·판매 또는 제공한 물품 등에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제조·설계 또는 표시 등의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제조·수입·판매 또는 제공한 물품 등과 동일한 물품 등에 대해 외국에서 결함이 발견되어 사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경우 또는 외국의 다른 사업자가 해당 조치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 외국 정부로부터 수거·파기 등의 권고 또는 명령을 받고 한 수거·파기 등

√ 자발적으로 한 수거·파기 등

4-4 리콜 : 정보의 수집

❖ 결함정보 보고자

결함정보를 보고해야 하는 사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47조제3항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 물품 등을 제조·수입 또는 제공하는 자
√ 물품에 성명·상호, 그 밖에 식별 가능한 기호 등을 부착함으로써 자신을 제조자로 표시한 자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복합쇼핑몰 또는 그 밖의 대규모점포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자

4-5 리콜 : 중대한 결함

❖ 중대한 결함의 범위

사업자가 시·도에 보고해야 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47조제4항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4조)

√ 물품 등의 제조·설계·표시·유통 또는 제공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된 결함으로서 소비자에게

① 사망,

② 의료기관에서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질식·화상·감전 등 신체적 부상이나 질병,

③ 2명 이상에게 식중독을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결함

√ 물품 등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위반한 결함

4-5 리콜 : 중대한 결함

❖ 결함정보 보고 기한 및 절차

사업자는 자신이 제공한 물품 등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으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결함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본문).

4-5 리콜 : 중대한 결함

결함정보 보고 기한 및 절차

① 사업자의 이름(상호나 그 밖의 명칭을 포함)·주소 및 연락처

② 물품 등의 명칭과 제조연월일 또는 공급연월일

③ 중대한 결함 및 위해의 내용

④ 중대한 결함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경로

⑤ 소비자의 피해가 실제로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인적사항

4-5 리콜 : 중대한 결함

❖ 결함정보 보고 기한 및 절차

다만, 물품 등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긴급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구술로 그 결함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단서).

4-5 리콜 : 위반 시 제재

사업자가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이행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86조제1항제3호)

4-6 리콜 : 권고에 의한 리콜

❖ 중앙행정기관의 리콜권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 대해 해당 물품 등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또는 제조·수입·판매·제공의 금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49조제1항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4-6 리콜 : 권고에 의한 리콜

❖ 사업자의 리콜권고 수락여부 통지

리콜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7일 이내에 그 권고의 수락여부를 통지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49조제2항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4-6 리콜 : 권고에 의한 리콜

❖ 만일,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리콜권고를 수락하지 않으면 다음의 사항이 신문·방송 등을 통해 공표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49조제4항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7조제4항).

√ 사업자의 이름·주소 및 연락처
√ 리콜권고의 대상이 되는 물품 등의 명칭
√ 리콜권고의 수락 여부
√ 리콜권고를 수락하는 경우에는 조치계획
√ 리콜권고의 수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 리콜절차

사업자가 리콜권고를 수락한 경우의 절차는 자발적 리콜과 동일합니다.

4-7 리콜 : 명령에 의한 리콜

❖ 중앙행정기관의 리콜명령

물품 등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소속 위해정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리콜명령을 하고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50조제1항).

4-7 리콜 : 명령에 의한 리콜

❖ 사업자의 시정계획서 제출

- 리콜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7일 이내에 시정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 소비자에 대한 리콜계획 통지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비자의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 등기우편에 의한 방법, 소비자의 주소를 모르거나 다수의 소비자 또는 판매자 등에게 시정조치계획을 신속하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방송이나 신문에 광고하는 방법 및 대형마트 등이나 물품 등의 판매·제공장소에 안내문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통지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50조제1항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제5호).

4-7 리콜 : 명령에 의한 리콜

❖ 리콜조치

사업자가 리콜조치기간 내에 리콜을 실시하지 않으면, 시·도가 직접 리콜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50조제2항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8조제7항).

❖ 리콜결과 보고 및 정부의 감독

리콜명령에 따라 리콜조치를 마친 사업자는 시·도에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8조제6항).

❖ 위반 시 제재

리콜명령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소비자기본법」 제84조제1항제1호).

OCOP ONLINE

감사합니다.